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일시 : 96년 11월 2일 오후 2시~5시

장소 :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회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 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행 사 순 서

사회 :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

- 인사말 :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대책위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연대사 :
 -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정치적 배경과 악용가능성
유선호(국민회의 국회의원, 내무위)
- 발제·토론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 정보화 시대와 전자주민카드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
 - 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보호
(임영화, 민변 변호사)
 - 전자주민카드는 보안기술상에 있어 완전한가?
(양기창, 컴퓨터 보안전문가)
 - 전자주민카드를 중심으로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역할
(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 내무부의 쟁점사항 반박에 대한 공대위 입장발표
- 질의응답 및 토론

목 차

■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996. 10. 19 / 2

■ 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 / 4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문화과학」발행인)

■ 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보호 / 9
(임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

■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대책위 활동에 대한 제언 / 21
(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 내무부의 쟁점사항 반박에 대한 공대위 입장 / 27

■ 별첨자료

< 1 >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32
(김주환/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박사과정)

< 2 > 호주의 ID카드 반대 캠페인 'ID 카드반대캠페인의 방법' / 37

< 3 > 내무부 사업계획 / 46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도입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가 총경비 2,735억원을 들여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98년 발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법적 근거의 미비라는 문제점과 국민 개개인의 대부분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통합되어 있어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은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지존과 사건,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리자에 의한 연금 가입자 정보 유출 사례,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사례가 93년 한해 동안만 292만건에 이를 정도로 '개인정보 누출'은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과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산망과 네트워크로 통합한다면 제2, 제3의 지존과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재산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개인의 원적지와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정치적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향후 전자주민카드의 금융·자산 정보를 포함할 계획까지 검토되고 있어 카드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도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생기게 될 문제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둘째, 전자주민카드 제도 추진은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 시행을 현행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삼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예정인 7개 분야(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 운전면허, 국민연금, 인감, 지문) 41개 항목은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명 체계이므로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셋째, 보안 시스템을 안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95년 안기부의 보안 감사 파문에서 드러나듯이公安 기관의 국민에 대한 감찰 시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안기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가중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안기부의 대공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주민카드가 21세기형 국민감시체계임을 증명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범죄자나 외국인에게만 채취하는 지문 제도, 이미 사회적 추세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을 온전히 유지하려는 한다는 점, 주소이동사항, 가족관계, 신체적 특징, 교통법규 위반사항, 병원진료 사항, 연금 납부 내역과 분담 금액, 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감시 체계를 보존하겠다는 의도이다.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는 하나 지구상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보안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국민의 사적권리가 지금보다 침해당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정보 선진국에서는 기술력의 부족이 아니라 크래킹(해킹)의 위험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대해 정보선진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이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향후 공대위는 11월 2일 토론회를 통해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 형성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을 막고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 운동을 해 갈 것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공익소송을 통해 개인 정보의 불법적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의 중단과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 >

1. 국민적 합의와 법적 근거 없이 진행 중인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번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1996. 10. 19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

강 내 회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문화과학」 발행인

1. 정부가 추진한다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실시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전자주민카드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의 행정 기능을 통합하여 총 41개 항목의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담으려는 제도라고 한다. 지금까지 여러 증명서들을 따로 발급받고 따로 관리하는 것을 통합하니 편리할 것이라고, 또 이런 통합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들 하는 모양이다. 전자카드는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하여 여러 종류의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국가의 행정비용과 인력의 절감하는 효과도 낳으리라고 한다.

전자주민카드제 실시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시민과 국민의 복지, 편의, 보안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포탈자, 사기꾼, 범법자들이 아닌 법 잘 지키는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되면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생각해보면 끔찍하 다는 생각 뿐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죄다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숨길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나에게도 숨기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굳이 숨길 것까지야 없더라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다. 잠자는 모습, 코 푸는 모습, 화내는 모습 같은 것을 왜 남한테 공개하고 싶겠는가? 나의 성격, 출신, 병력, 학력, 경력, 재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중 일부는 물론 공개해야 하겠지만 그럴 때도 선택은 내가 하고 싶다. 공개하기 싫은 나에게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공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나에게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아서 관리하고 유포하는 제도이다. 한 예로 의료보험증을 겸한다니 개인 병력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병이란 신체가 걸리는 것이니 나의 병력은 나의 신체가 경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병력의 공개는 나의 신체의 행적의 공개와 직결된다. 특정한 질병은 굳이 성병, 에이즈와 같이 민감한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에 대한 정보 공개는 나의 행적과 나의 평소 생활을 깡그리 폭로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교통위반과 같은 단순한 실수로, 혹은 여행중에 검문에 걸려 전자주민카드를 제출해도 이런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산단 말인가? 누구나 가끔 겪을 수 있는 도난사고라도 당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3.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하게 될 것이므로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가가 관리한다고 불신이 해소될 수는 없다. 한국의 국가는 오랫동안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받아왔고 이제 겨우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국가조직에 대한 불신은 크게 사라지지 않았다. 인권보호 수준이 지극히 낮은 우리사회에서 나에게 관한 민감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니 결코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인의 인권 유린 주범이라 할 안기부, 내 무부가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부동산회사에서부터 신용카드회사, 백화점, 나아가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 정당(특히 여당) 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이권단체들이 보낸 우편이 당도하고 있다. 한 번도 나에게 관한 정보를 그들에게 준 적이 없는 데 어떻게 우리집 주소를 알아냈는지 우편물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국가가 지금도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국가의 선함을 믿지 않는다. 그것의 현실적 위력을 인정하지만 국가 체제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는 생각이 안든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개인으로서의 나,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의 나에게 대해 이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에 더 큰 권력과 권한을 부여할 제도로만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제 실시로 국가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욱 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소유 함으로써 결국 국가와 시민(및 개인들) 간의 권력 균형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시민운동이 크게 미약한 사회이다. 전자주민카드제 실시는 시민들에 허용된 얼마 안되는 자유마저 축소시킬 것이 분명하다. 자유는 거리낌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 전자주민카드제로 감시받거나 통제받는 사회에서 이런 거리낌 없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나는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장소들을 몇 곳 가고 싶고, 편지, 전화, 호출기 등이 닿지 않는 곳 몇 곳 정도를 확보하고 싶다. 사회체제로부터 탈주하고 싶은 것이다. 사회조직망의 어느 한 결절점에 불박혀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낯익다. 그것도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지금도 자신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숨을 곳이 몇군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실시하는 나의 이런 희망을 더 무참하게 짓밟을 것이다.

4. 전자주민카드는 결국 그것이 표방하는 기능 이외의 것, 훨씬 더 가공할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기능 변환마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나의 우려는 최근 개인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의 사회적 적용 증대 경향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많은 첨단산업체들이 개인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저궤도위성 800여개를 쏘아올려 지구상 어디서건 개인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자주민 카드는 당장 상업 정보망에 연결될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되면 나는 내가 요즘 버스 탈 때 사용하는 전자카드로 내가 하는 온갖 일을 일일이 전자적으로 보고하면서 다니는 꼴이 될 것이다. 나의 병력(사람에 따라서는 에이즈, 성병,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진 이외에서는 남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나의 행적, 나의 모든 것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망에 넣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디에서나 감시당할 수 있다. 이른바 '데이트베일런스'(data + surveillance)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카드를 내가 사용하는 한, 그래서 그것을 판독기에 넣는 순간, 나는 정보로 전환되어 노출되고, 그 노출로 인해 어디서건 감시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이 경우 내가 차고 다니는 '개목걸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전자주민카드는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방식과 형식을 바꿔버릴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을 때 가능하면 정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한다. 급한 용변도 이 때는 참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남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신뢰란 언행이 일치할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전자통신이 성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인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기도 많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는 등 정체 감추기가 많이 성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형태의 예의(네티켓)와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예의와 규범은 타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신뢰는 의견의 상호교환을 전제로 해야 가능할 것이다. 어느 일방만이 발언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게임을 한다면 신뢰는 쌓이지 않을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는 컴퓨터통신상의 대인관계와도 달리 나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전자주민카드제로 만들어지는 신뢰는 나의 얼굴 표정, 눈빛, 음성, 태도 등과는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된 나의 관한 정보의 확인을 통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동회 직원이든 백화점 점원이든 나를 신뢰하려면 나의 얼굴표정을 보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컴퓨터 조회만이 내가 유일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때 인간에 대한 신뢰는 정보 확인으로만 이루어진다. 사실 이런 일은 어쩌면 인터넷과 같이 자유로운 시민적 활동이 가능한 곳에서도 이미 일어난 변화인지는 모른다. 우리는 컴퓨터통신을 하는 순간 육신이 아닌 정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제도와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또한 내가 선별하여 보내는 정보가 공개될 뿐인데 반하여 전자주민카드제에서는 국가가 정한 범위의 정보가 나의 선택권

을 배제한 채 공개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적어도 아직은 다양한 저항적 개인들과 집단의 발언이 가능하며 접속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대중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통제, 즉 통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체제가 실시하게 될 전자주민카드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적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집단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6.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꼴이 된다. 전자주민카드제는 우리 사회를 초팬옵티콘으로 전환시킬 것이 때문이다.

초(超)팬옵티콘은 팬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의 새로운 형태이다. 팬옵티콘은 감옥, 공장, 학교와 같이 주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공간적 체계로서 감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간수, 교사, 십장 등)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로 인해 검열이 가능해지는데 이 검열의 효과로 감시받는 사람들(죄수, 학생, 노동자)은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길들이게 된다. 미셸 푸코는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식의 감시로 인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푸코가 19세기의 대표적인 지배구조로 간주했던 팬옵티콘은 이제 초팬옵티콘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19세기 판옵티콘은 감시자의 현전뿐만 아니라 제한되고 통제되며 조절되는, 특정한 공간 속에 있는 피감시자의 육체적 현전을 필요로 했다. 20세기말에 이르러 감시의 기술적 조건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이런 육체적 현전과 근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통신망'과 그것이 산출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초판옵티콘이다. 벽과 창문, 망루나 감시자가 없는 감시체제를 이루기 때문이다. 개인은 직접 통제를 당하지 않아도 감시에 길들여지게 된다. 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들고 다니며 온갖 거래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때 각 거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부호화되고 저장될 것이다. 한심한 것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이다. 내가 정보의 원천이 되면서 동시에 기록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들과 그 기관들에 접근이 가능한 개인들, 집단들은 아주 손쉽게 초팬옵티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자신을 감옥에 수감시키는 꼴이 되고 지배자는 썰렁하고 알먹는 셈이 된다.

7. "군복무를 마친 후 나는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소환받았을 때 나는 설마하니 군대가 나의 직업과 월급 액수까지 알 줄은 몰랐다. 나는 그것을 내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싱가포르의 한 시민의 항변이다. 한국인 다수가

현역, 예비역, 민방위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런 국민역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항변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전자카드로 나의 관한 정보가 집중되면 이 카드 하나로 나의 신상이 일거에 파악되어 가끔 들리는 동회, 어쩌다 나를 검문할 경찰관, 혹은 심지어는 상거래를 하면서 전자카드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백화점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직종에, 어떤 직위에, 어떤 병력을 가지고 얼마 만큼의 월급을 받으며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다면, 백주대로에 발가벗고 나다 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위험은 전자카드가 나의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커진다. 국가의 기관이, 아니면 사조직이 나의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종합적으로 가지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아직 그런대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한 정보가 파편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일부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점도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로 나의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체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도 컴퓨터 자판기로 몇 번 누르는 데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의 관한 정보들의 검색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섭다!

8. 이런 세계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런 세상에 살기 싫다.

이상 열거한 이유들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다른 이유들로 나는 전자주민카드에 실시를 반대한다.

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보호

임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

1. 정보화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

가. 프라이버시보호의 법적근거

- (1)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헌법 제17조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주로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사적생활 영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의 ‘사생활의 자유’로 해석되면서 주로 소극적인 권리로 파악되는 반면, 프라이버시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고도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더 프라이버시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용어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권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는 헌법제17조, 적극적 권리는 헌법제10조를 그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정부의 청사진

- (1) 정부는 1996. 6.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사항, 인감증명서, 지문등 7개분야 42개 정보를 우선 통합하여 수록하되, 각종 자격증과 금융기능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총1억9천2백만건의 각종 증명을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연간 등초본 1억 7천만통, 인감증명 5천7백만통의 발급업무와 비용경감, 공무원감축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까지 포함하여 1천억원 규모의 절감효과가 생기고, 본적지, 동사무소등에 일일이 갈 필요 없이 무인 발급기에서 필요한 증명발급,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을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적어 신분 확인등에 있어 주민등록증보다 우월하게 되는 등 범죄예방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등등의 장미빛 청사진이 펼쳐지는 듯 하다.
- (2)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단순히 7개분야만으로도 가히 엄청난 정보통합이라 아니할 수 없는 데, 정부는 그외에도 각종 자격증과 금융기능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니, 통합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 일로에 다다를 개연성이 충분하여 본고에서는 전자주민카드를 위 7개분야뿐 아니라 그밖의 다른 정보까지도 통합 수록되는 카드로 보고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 프라이버시보호대책의 일반적 원칙

(1) 미연방 보건교육복지성의 5원칙

- (가) 1973년 미연방 보건교육복지성은 점점 본격화되어 가는 컴퓨터사회에서의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다수 기록, 보관, 이용하게 되는 입장을 주목하여,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에 대응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검토하여 “기록, 컴퓨터와 시민의 권리”라는 보고서를 냈다.
- (나) 그 내용은 추후 미국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대책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명한 ‘5원칙’이 되었다.
- ① 개인 데이터 기록보관시스템에 관하여,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밀로 되어서는 안된다.
 - ② 개인에게는 자기에게 관계된 어떠한 정보가 수집, 기록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 ③ 개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본인의 승락없이 다른 목적

에 사용되고, 제공될 경우,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 ④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기록을 정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하는 기관과 조직은 그 목적을 위해 정보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용(濫用) 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미연방의회 의 프라이버시보호법

(가) 1974년 미연방의회는 컴퓨터로 비롯된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이용의 증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도대체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달된 공통된 인식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분포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 컴퓨터로 비롯된 정보기기의 이용증대는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
-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분포는 규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전항의 공통된 인식하에 제정된 프라이버시보호법의 8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기록보관시스템에 관한 “공개적 원칙”
- ②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기록에 관하여 열람, 복사하여 입수할 수 있어야 하는 “접근(access)의 원칙”
- ③ 기록의 정정권을 인정하는 “개인참가의 원칙”
- ④ 수집할 개인정보에 관하여 확실한 제한을 두는 “수집제한의 원칙”
- ⑤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수집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용제한의 원칙”
- ⑥ 전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수집한 기관이 타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공제한의 원칙”
- ⑦ 수집,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보관

리의 원칙”

- ⑧ 각 기관은 개인정보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책임만으로는 안되고, 프라이버시 보호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 원칙”

(3) OECD의 가이드 라인

(가)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1973년 ‘데이터 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서독, 프랑스가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유럽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된 계기는 1980년 OECD의 가이드라인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나) 가이드 라인

①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적법하고,공정한 수단으로 얻어지고,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고, 또한 동의를 얻어 수집되어야 한다.

② ‘정보내용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시보다도 늦지 않은 시점에서 명확화되어야만 하고, 그 후 정보의 이용은 당해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그 후 당해 수집목적에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목적의 변경에 있어서도 명확화된 다른 목적의 달성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전항과 같이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개시(開示), 이용되거나 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안전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되면, 부당한 접근(access), 파괴, 사용, 수정, 개시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계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개정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목적과 함께 관리자의 식별, 통상 주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⑦ ‘개인참가의 원칙’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

- i) 정보관리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얻는 것
- ii) 자기에 관계된 정보를 첫째, 합리적인 기간내에, 둘째, 만약 필요하다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셋째, 합리적인 방법으로, 넷째, 자기가 알기 쉬운 형태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 iii) 위 i), ii) 항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받을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iv) 자기에 관계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정보를 소거(消去), 수정,완전화,보정(補正) 하게 하는 것

⑧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상기의 원칙들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동반된 책임을 가진다.

2.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의 문제점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약칭 ‘개인정보보호법’)

- (1) 개인은 ‘정보의 주체’라기보다는 ‘정보수집의 객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정보주체’를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보주체가 정보주체답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그 정보에 대한 정보공여, 정보

열람, 정보 수정권, 즉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자'로서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경우에는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열람권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열람권이 인정되는 것은 개인 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도 전혀 열람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라) 역시 위 제12조에서는 개인에게 열람권이 인정되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3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 보유기관이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해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그나마 열람이 가능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그 보유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국가기밀보호법이다.

(가) 위 제(1), (나) 항 과 같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아예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결국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은 아예 처음 부터 열람권조차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해당할 것이므로 결국 '국가안전기획부'가 취급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주체들의 정보접근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이나 마찬가지이다.

(3) 사망자의 인권, 명예, 프라이버시도 보호되어야만 한다.

(가)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망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아예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다.

(나) 그러나, 사망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생존하는 개인'이 사망한 것일 뿐 아니라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사망함으로써 정보가치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 로든지 생존해 있는 나머지 개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망자 본인의 인 권과 명예는 물론 나머지 생존해 있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 역시 보호되어야 하고, 그 보호를 위한 권리는 그의 유족, 또는 사망자와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까지도 인정되어야만 한다.

(4)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관행이 먼저 확립되어야만 한다.

(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결국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은 아예 처음부터 열람권조차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범죄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목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의 당사자인 국민 개개인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발상 과 다름없다. 아직도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전근대적 수사관행, 비과학적 수사관행,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우선 그러한 수사관행 을 개선하겠다는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독점하되, 그 정보주체에게는 전혀 열람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일부 교육이 잘못되어 친구를 때리는 문제학생에게 인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을 시 키기 보다는 몽둥이를 손에 쥐어 주는 꼴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5)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보호되어야 한다.

(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아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아마도 위 법규정은 어차피 관련 통계법에 통계관련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옥상옥(屋上屋)”의 규정을 들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어차피 통계수치중 하나로 표시될 뿐이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듯하다.

(다) 그러나, 통계조사결과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목적외 이용의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통계란 특정 개인들을 표본으로 하여 수집, 분석되는 것이어서 역으로 성명이나 거주지 또는 특정번호로 기입, 전환하여 개인을 특정화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6)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유가 필요하다.

(가)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는 다소 추상적 규정에 가깝다. 차라리 사상, 신조, 종교, 전과경력, 병력 등 사회적 차별에 관계될 수 있는 사항과 그 사항을 취급할 수도 있는 관련 정보수집기관별 분류나 구체적인 수집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나)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보유의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내부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부절차가 있을 뿐이어서 보유필요성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있고, 또한 일부 또는 전부를 아예 관보에 공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보유목적외 목적에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제2항 단서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외 목적에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이전에 허용되는 범위가 8가지에 이르고 있고, 특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기도 하다.

나. 전자주민카드사업시행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

(1) 정보유출의 가능성과 프라이버시권침해

(가) 전자주민카드사업시행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통합되면, 아무리 정부의 주장처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막을 수 없다.

첫째, 크래킹(일명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둘째, 정보관리자 내부의 관리소홀 또는 공모에 의한 정보유출,

셋째, 기업등 사실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

(나) 전자주민카드사업시행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유형과 그 사례 및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해서 직접 구체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해야만 그 피해규모와 피해사태가 정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정보통합은 단순히 기능의 산술적 합계가 아니라 통합된 정보의 폭발적인 승수효과때문에 사실 미리 전자주민카드사업시행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초보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예견될 수 있는 피해사태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형사사건 관련 정보

정보유출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관리기관간의 정보목적의 유용, 또는 정보교류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의 전과기록등이 유출되어 당해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신 연좌제의 출현가능성)

남편의 국가보안법 위반전과로 인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임용에서 탈락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그 밖에 고용주는 취업희망자에 대한 전과기록이나 블랙리스트를 입수하여 취업이나 고용을 거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그 기록에 착오가 있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피해는 심각하다.

(3) 사회복지관련 급부행정관련기록

생활보호대상자등 복지관련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수급희망자들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급부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불법입수함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적용대상자들이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

다.

(4) 주민등록기제사항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개인정보가 카드 하나로 통합되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해당 개인은 물론 그 개인과 관련된 모든 가족, 사회적 활동 및 그 활동단체에 대한 정보까지도 일거에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피 해로만 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차라리 순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미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식이 전혀 생기지도 아 니한 상태에서 분단현실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생긴 측면이 강하고, 어느새 마치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 것처럼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듯 하다.)

(5) 통신비밀

개인간의 통신의 비밀과 정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통신주체도 모 르고 있는 사이에 도청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법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개인간의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감청결과를 근거로 국가 기밀누설등 일종의 간첩혐의로 구속수사를 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한편, 재야인사의 주택에서 도청기가 발견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불법 도청관련자에 대한 형 사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 의 진전도 없는 상태이다. (담당수사관과 같이 근무하는 수사관에 따르면, 고소직후 “안기부직원으로 파악되었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는 담당사건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6) 군사정보

최근 군사기밀누출로 인한 보도사건에 관련하여 모 신문사 기자의 취재권, 국민의 알권리등 과의 대립 및 기밀누출자의 내부공모자 관련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7) 학교기록 관련정보

각종 대학입시자료와 학사행정 및 (비공개) 추천서의 누출등으로 인한 부정입학사 례와 학 사행정의 왜곡 가능성도 있다. 잘못된 학사정보가 이미 유출되어버린 경우, 그

에 대한 정보 수정요구권 외에도 유출로 인한 피해복구불능상태의 위험도 있다.

(최근 모대학의 입시관련 성적자료의 유출로 인하여 학교 계급화등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8) 고용기록 관련

고용주에 의한 정보유출 또는 불법정보입수등으로 취업희망자에 대한 부당한 선별 거부가능 성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선별 처리등의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 이른 바 전 (前) 고용주의 정 보누출 또는 정보담합등에 의한 이른 바 블랙리스트에 따른 취업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가능 성,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 감시, 통제기능의 강화로 인한 부작용(예, 전화모니터링등),

(9) 소비자활동관련 정보

소비자 관련정보의 부적절한 통제와 정보전용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능성(주가조작, 상품가격 조작 및 적합한 소비활동의 왜곡가능성) 이 있고, 소비자정보기관의 거대화 에 따라 경제질서 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10) 금융,세무 관련 정보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정부의 정보독점현상으로 집적된 정보의 순기능으로는 돈 세탁방지 및 부동산관련 조세확보 및 투기억제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정보활용,집행의 선 별기능의 역기능(형평성 결여등) 도 고려할 수 있다.

(11) 의료,보험관련 정보

정신병력, 약물남용 치료경력, 에이즈 병력등 사생활에 치명적인 의료관련 정보의 유출에 따른개인의 몰사회화 격리피해현상의 가능성과 병력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착오 또는 부정확한 의료정보에의 접근 및 수정요구를 위한 의료정보판단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가중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다. 그밖의 문제점

(1) 자기결정권 방어교육 방안 부재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하여, 정정,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보주체가 문제된 정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된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합의 순기능 홍보에 역점을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개인이 프라이버 시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에 관련한 교육을 우선하여야 한다.

(2) 국내 정적(政敵) 또는 반대세력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악용가능성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통합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쪽에서 그 상대진영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강화되고, 반복될 것이다.

3. 전자주민카드시대는 이뤄질 것인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펼쳐보인 '정보화촉진계획'의 청사진이 아무리 유용하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화시대 하에서 국가의 정보독점에 따른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불구정보화시대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회단체에서는 국가의 정보독점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고, 국가도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계획'에 앞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권력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개혁조치를 완비시켜 국민과 국가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독점하게 될 국가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제어장치까지 마련한 후에야 비로소 전자주민카드시대를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원칙이 불비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자주민카드를 대표되는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정보통합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역할

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1.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우리의 조건

세상에서 우리사회만큼 프라이버시에 무관심한 나라도 없다. 아니 개인의 사생활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권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생활도 특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를 받거나 혹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치정사건에서 사생활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 일련번호를 붙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가 성인되면 군에 입대해서 군번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그로 부터 국가에 의해 관리를 받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가 프라이버시 무감증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지난 연세대 사태이다. 연세대사태로 학생운동권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자 경총등 경영자단체도 이에 질세라 연세대사태 관련자는 신상과약을 해서 취업 제한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곤 어느 누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문제가 사회운동에서 다루어진 예는 거의 없다. 80년대 사회운동진영에서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쳤으나 프라이버시권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있다고 하여도 80년대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이나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정보사찰사건정도 고작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자주민카드공대위는 우리나라 최초로 프라이버시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화두로 문제를 제기한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대위가 딛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게 사실이다. 국민들은 전자주민 카드에 대해 거부감보다는 편리함에 관심을 갖는다. 물론 현재의 불편을 초래한 원인이 국가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제도적 틀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생각한다. 관련부처인 내무부는 국가전산화, 요즘은 세계화, 정보화라는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현재 시험실시단계까지 가있다. 업계는 수조원의 시장을 놓고 선점을 위해 로비에 열심이다. 우리사회에서 이 제도를 들어내놓고 반대하는 집단이나 사람은 별로 없다.

2. 신분증명제도의 개편없는 전자주민카드

사실 전자주민카드가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진 제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추진되기 시작한지 몇년이 되었지만 시민운동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모 시사주간지에 특집기사가 실리고 국내에서 개최된 맥브라이드회의에서 한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통합신분증제도 - 그것도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제도는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예비한다는 포부와는 달리 주민등록증제도 및 인감, 지문 제도 등 구시대적인 신분증명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 개편한다는 점에 있다. 헌법 17조는 국민 사생활의 보호와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신분증명을 받게 하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주민등록증제도가 간첩을 색출한다는 미명아래 68년부터 도입된 이래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한 목적외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행정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재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전자주민카드로의 통합은 편리한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정부가 선전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진학과 취업을 포함한 개인의 대부분의 사회 활동에서 주민등록증은 기본

적인 요구사항이고 여기에 인감, 등, 초본, 지문 등 쓸데없이 많은 증명서류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두고 하나로 통합시켜 놓으면 편리해진다는 발상은 마치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닮아난 것이다. 또한 인감, 주민등록등, 초본등은 사회적으로 퇴장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신분증명을 통합한다는 전자주민카드제도에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인감은 점차로 무인감제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취업시에 등,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지문날인제도는 대표적인 반시대적 악제인데, 외국인이나 범법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전국민을 범법자 취급하여 국민모두가 지문날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는 우리 외에는 없다. 따라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은 통합증명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개인보증과 같은 제도를 없앨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전자주민카드에서 고려해야할 몇가지 점에 대해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여러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절대적 반대(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반대(개인정보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등등의 의견이 다양하게 토론되고 있는 것 같다. 공대위가 어떤 정책적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명확히 하였으면 한다.

첫째 전자주민카드는 내무부의 말처럼 이미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점이다. 내무부에서 작성된 자료에 근거하면 전자주민 카드는 이미 수집된 - 개별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된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그 정보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내무부는 통합증명제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명확해 지는 것처럼 전자주민카드는 종이증명에서 디지털증명으로 매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 증명제라는 제도와 입법과정을 통해서만 전자주민카드라는 제도는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증명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놓고 판단을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의 열람, 정정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와 함께 누가 나의 정보를 열람하였는지를 기록할 국가의 의무와 이를 열람할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나 이들 정보를 통합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이라는 이름하에 국가기관이 공공연하게 개인정보를 감시를 위한 도구로 활용

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기관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경우엔 그 위험성은 더욱더 커진다. 특히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는 미래사회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새롭게 대두되는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정보화는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진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인터넷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한다. 그렇지만 개인은 자신이 주고 받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지 못하다. 특히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더욱더 그렇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알 아내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한다. 그러나 해커는 꼭 개인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감시 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 특정한 주소(address)를 갖고 있는 개인의 전자우편을 훔치는 것은 약간의 지식만 있는 사람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전화 혹은 우편으로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선 전자우편이 그런 역할을 대신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호책은 어디에도 없다.

법으로 정한 감청을 넘어 도청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없는 가상 공간에 개인은 특정한 집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렇 다고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누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알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 기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암호가 중요한 화두도 제기된다. 암호가 국가의 문제라거나 혹은 기업의 문제로 국한시켜 보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암호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기때문에 암호를 국가가 독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뒷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CERT 에서 한글화한 한글 PGP프로그램이 안기부의 제재로 아직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자우편이용에서 항상 PGP를 이 용하 도록 하기 위한 운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거대기구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조직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는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문제는 사각지대라할 수 있다. 생산성향상이라는 이름하에, 노동통제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ILO의 새로운 권리로써 등장한 기업에서의 사생활보호권(첨부 글 참조)도 이런 사회적 흐름에 제어하기 위한 국제노동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경우도 이에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한다.

<별 첨>

ILO MEETING ADOPTS DRAFT CODE OF PRACTICE ON PROTECTION OF WORKERS' DATA

Monday 7 October 1996 (ILO/96/29)

GENEVA (ILO News) - A Meeting of Experts on workers' privacy today adopted a Draft Code of Practice Endnot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at the ILO in Geneva today. Though the draft code is non-binding and the guidelines are voluntary, it represents the first international effort designed "to provide guidan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The Draft Code, which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regu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work rules, policies and practical measures" affecting collection, storage, dissemination and monitoring of workers' data, will be submitted to the ILO's Governing Body, which meets in November 1996.

The Meeting of Experts recognized "that a number of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binding procedures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draft code state that "personal data should be used lawfully and fairly, and only for reasons directly relevant to the employment of the worker."

It says that in principle, personal data should be use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originally collected."

With respect to data collected in connection with technical or organizational measures "should not be used to control the behaviour of workers" and that "decisions concerning a worker should not be based solely on the automated processing of that workers' personal data."

The Draft Code calls upon employers,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to "cooperate in protecting personal data and in developing policies on workers privacy"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in the code.

It stresses that "all persons ... who have access to personal data, should be bound to a rule

of confidentiality" in their handling of the data. It also says that "workers may not waive their privacy rights."

With respect to collection of personal data the code states that employers "should not collect personal data concerning a worker's sex life,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beliefs or criminal convictions" unless "the data are directly relevant to an employment decision and in conformity with national legislation." In addition, "polygraphs, truth-verification equipment or any other similar testing procedure should not be used." Genetic screening "should be prohibited or limited to cases explicitly authorized by national legislation."

The code states that "Employers should ensure that personal data are protected by such security safeguard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guard against loss and unauthorized use, modification or disclosure." Personal data covered by medical confidentiality "should be stored only by personnel bound by rules on medical secrecy and should be maintained apart from all other personal data."

Personal data should not be communicated to third parties without the worker's express written consent unless the communic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threats to life or health, required by law,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r required for the enforcement of criminal law."

The Code also states that "workers should have the right to be regularly notified of the personal data held about them and the processing of that data," and that they should have "access to all of their personal data."

The 24 independent experts came from over 20 countries. The ILO Governing Body had named them after consulting governments, employers' and workers' groups. The ILO, founded in 1919, has 174 member States.

Endnote : Draft code of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ISBN 92-2-109827-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1995.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

내무부는 10월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설명회에서 공대위의 주장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을 당일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내무부의 공대위 입장에 대해 반론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내무부 주중에 대하여 제 반론을 제기한다.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이나 카드가 인적사항(주민등록사항)이 동일하고 자격사항만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발급, 관리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각종 증명의 통합 필요성 및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신분증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자료집 p.4)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된 신분증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주민등록증이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료보험카드 혹은 운전면허증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더욱 개인의 분야별 정보를 통합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전자주민카드로 불리워야 하는 7개 증명을 통합되고 몇가지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새로운 통합신분증명서이다.

이렇게 통합된 증명제도를 도입하는데도 정부는 주민등록법, 의료보험법 등의 법,제도적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식과 발급절차만을 개편하는 것으로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통제력을 지니는 신분증명제도의 도입에 예상되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정부는 통합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17조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조항을 침해할 우려가 큰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헌적인 발상인 것인데, 여기에 국민적 동의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1천억원 가량을 집행하고 사범사업까지 마쳤으며, 카드발급사업자, 시스템 개발 업체까지 선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행위는 국민의 동의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적 행위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들의 기본인적사항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든 증명서에서 동일하고 다만, 각종 증명서의 기능을 정의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만 다른데도 별도의 증명발급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은 여러곳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과 행정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p.12)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진학과 취업을 포함한 개인의 대부분의 사회 활동에서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고 여기에 인감, 등, 초본, 지문 등 쓸데없이 많은 증명서류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두고 하나로 통합시켜 놓으면 편리해진다는 주장은 일의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인감, 지문, 주민등록등초본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퇴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행정쇄신 위에서도 인감, 등, 초본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을 끌어낸 바 있는데 구태여 이를 전자주민카드에 담을 이유가 없다. 또한 이를 통합시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내서는 안될 일이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선택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에 따른 제반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 조항과 정보공여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둘째,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 의료보험 정보는 모두 국민 스스로가 전입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P.13)이라는 것이 자기정보가 기관단체가 아닌 외부로 임의로 유용되고 통합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를 위해 정부가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타기관에 공여한다면 정보수집 목적에 맞게 정보가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

셋째, 미국이 1988년에 기존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컴퓨터 연결 자체에도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내용인 ‘네트워크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개정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보를 통합시킨다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도로 정보를 통합시킨다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이며,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 기존 법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식 및 발급절차의 개정만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정보수집 이전에 법규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넷째, 정보수집의 목적이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의 제도 운영과 각종 증명발급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이나 예외조항에 의해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수시로 유용되고 있으며, 전자주민카드시행에 따른 통합은 원래의 정보수집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분명한 사용목적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

다섯째, 국내상황으로 확대해서 볼 때, 공안전산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정보의 열람권을 제한하고 있고, 비밀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OECD 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 고유번호의 문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는 별도의 개인별 고유번호를 입력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필요성도 없다.”(자료집 P.19)

그러나 다음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정부는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IC내에 입력되므로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보화의 열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종 컴퓨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자료집 P.9)

“전자주민카드에는 개인별 고유번호가 IC내에 입력되므로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보화의 열쇠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종 컴퓨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내무부

사업개요 96. 5월 발행)

들 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내무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서술되어 있는 문구이다. 그러나 6월에 발행된 내무부 문건에 표현된 개인별고유번호가 자료집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서술된 문장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내무부가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정했다는 뜻인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가 사회문제화된 시점이 5월 이후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정부가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별고유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내무부 문서에서만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6.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는지의 여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고, 안기부는 보안대책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차문역할만 할 뿐이고, 주민망에 전혀 접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자료집 P.15, 16)

그렇다면 추진기획단에 안기부 대공담당이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차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진기획단에 참석을 해야지 대공담당자가 추진기획단에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전산센터의 자료는 법에 의거해 기관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다(P.16)고 한다면 안기부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언장담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안기부, 경찰은 언제나 법에 의거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고유번호까지 도입이 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21세기형 감시통제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7. 정보의 집중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산센터의 정보는 20만메이상을 발급하는 초기 발급시에는 정보를 집중하게 되나, 일제발급이 완료되면 점차 각각의 전산망으로 분산하게 된다. 다만, 신규 17세자나 재발급시에는 해당 전산망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발급하게 된다”(P.14)

정보가 주전산기에 모여 있지 않으면 집중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정보의 집중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다. 정보의 집중은 주전산기에 정보가 다 모여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많은 정보가 서로 교류되고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하는 점이다.

더구나 내무부 사업개요를 보면 분명히 전자주민카드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중은 어마해질 것이다.

또한 아래에 서술한 글을 보면 주전산기에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는 주장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전산센터의 주전산기는 2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보가 손실될 것을 대비하여 자료를 별도 보관 관리할 계획이다.”(P.18)

자료를 별도로 어떻게 2중으로 보관관리 하겠다는 것인가?

정보의 집중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회자리에서 선 발제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정보는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크레킹을 할 이유가 없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선거인 명부유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모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아니라 신용정보까지 포함된다면 그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과 보안상의 문제는 차치해두더라도 사람의 손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정보의 유출은 크레킹뿐만아니라 정보의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이 오히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전산화된 자료의 크레킹에 의한 유출과 내부공모자들에 의한 유출사례의 비율이 3 : 7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약해서 정보관리자들에 의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의한 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만약 유출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김 주 환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박사과정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 칩 속에 담은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 등의 개인 신변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처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후진국들에는 그러한 카드를 시행할 기술이나 돈이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정보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에서는 그러한 카드를 시행하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민의식과 제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그 중의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제도 (universal identification system),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서 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10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 미처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더욱 더 위험한 전자주민 카드로 나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라는 말 자체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가십거리의 대상인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뭔가 뻔뻔치 못해 숨길 것이 있을 때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뻔뻔한 자는 숨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식의 논의와

기본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에는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다.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며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개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도입하였던 고 샘 어빈 상원의원은, "정부가 개개의 국민에 대해 알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정부에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더욱 커진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한 권리 장전은 허튼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1980년 말 전국민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의 반대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 이래 여러차례 보편적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지만 각종 인권단체의 광범위한 저항 때문에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사회보장번호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반이민법 안중에 하나로 보편적 신분증제도가 상정되어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Roger Clarke, Information Technology: Weapon of authoritarianism or tool of democracy?)

권위주의체제의 산물인 보편적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곳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정도나 그 이상의 정보기술과 돈을 갖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는 보편적 신분증제도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1990년에 EC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안(Privacy Directive)을 상정하였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저음을 수집, 처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가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선진국가들의 경제협약체인 OECD도 19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하바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보주체인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한다. 셋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확실하고도 의식적 인 동의 (예컨대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넷째, 정보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한다. 다섯째, 정보수집이전에 그에 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어야하며, 그 내용을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위의 여섯가지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적보호장치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사적 영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상품화와 남용 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다. (한편, 1993년에 뉴질랜드에서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법안은 가장 앞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것과 퀘벡 것 모두 OECD의 가이드 라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스튜어트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 사회에서는 기술적 장치와 법적 제도만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 시민운동 만이 프라이버시권을 지켜낼 수 있다. 물론 가장 첫발은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시행이다.

지금처럼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주된 이유로 내세워서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 한다. 우선 정보화가 몰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또 사생활 보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둔 후에야 전자주민카드 실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드 자체보다도 그러한 전자카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전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이스링스(database + surveilla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튼 미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을 때 뿐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그러한 위험성을 막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앞면에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손톱만한 크기의 IC(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며, IC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 지문, 국민연금 등 7개 분야 20여개 사항이 입력돼 있다. 시는 전자주민등록발급 대상자를 약 8백만명으로 잡고 카드 제조와 발급에 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정보(특히 의료와 개인 경제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누가 관리할 것

이나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거대해지는 데이터베이스(병원, 공공기관 등)나 통신망(인터넷 등) 등에 관한 것들이지, IC 회로를 내장한, 전국민을 위한 전자주민카드는 (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기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반박 자료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히려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자랑스레 주장들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자주민카드는 뚜렷한 법적 근거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그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실행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기술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빅브라더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에 있는 정보는 자신의 것이라 해도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출력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관리자는 어떤 형태로든, 고의로든, 실수로든, 개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 복사, 저장, 판매 등을 할 가능성이 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그리고 인간의 제도적 통제장치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인 만큼 완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에 의해 고장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크래킹 당해 정보가 누출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 불법으로 그러한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도 있다.

사소한 운정 위반과 사고 경력, 국민연금증에 실려 있을 각종 데이터(직업, 직위와 그로 추정 가능한 재산 상태 등), 의료보험증에 실려 있을 병원 방문과 치료 경력, 사소한 병력과 개인의 세세한 건강 데이터가 들어 있을 병원의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일련번호(예컨대 의료보험증 번호),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인감증명에 관한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 등 초본과 지문, — 이러한 중요한 모든 개인 정보를 저장, 복사, 열람, 전송이 순식간에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하나의 카드에 담아 놓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세계각국의 프라이버시 옹호 관련 단체들은 지금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중요 단체와 개인의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Roger Clarke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

CPSR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http://www.cpsr.org/dox/home.html>)

EFF: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정보사회의 각종 정보기술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단체 (www2.eff.org/) EFF, ACLU, CDT, 등은 품위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필라델피아법원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EFF는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골든키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며, 미의회에서는 7월 25일 인터넷상의 암호체계를 개선시키는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이 법안은 아메리칸 온라인, AT&T 등 영리단체는 물론 수 많은 비영리 사회-인권단체로 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받고 있다. 주로 암호체계기술의 수출금지에 대한 완화를 주요골자로함, 국제적인 인터넷 통신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려면, 전세계적으로 암호체계기술이 확장되어야만 한다.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www.pff.org)

EFF, EPIC, CDT 등의 단체는 다시 인터넷 프라이버시 연합(Internet Privacy Coalition; IPC:www.privacy.org/ipc)이라는 단체를 최근 결성하였다.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1990년에 결성된 비정부비영리 국제 기구로 주로 학자, 법률가, 정치인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여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활동한다. 주로 정보 기술의 남용에 의한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침해를 막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국 이상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로 국제연계 운동을 펴 왔다. 한예로 태국과 필리핀 에서 PI는 그 지역내의 인권운동가 그룹과 함께 정부의 전국민 신분증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국민 신분증제도의 실시를 막는데 성공하였다. 매년 프라이버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는데 올해에는 9월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로 북미,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신분증제도, 군사감시체계, 데이터 매칭, 경찰 정보체계, 신용카드회사등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는데 주안점; 본부는 영국 런던; 집행부는 미국 워싱턴 디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이다. 매년 4차례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매년 한차례 컨퍼런스를 연다. 그 밖에도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로서는: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는 정부 산하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의 디렉터인 사이몬 데이비스 박사는 현재 한국의 전자주민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각국의 회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되는 사항으로는 PI 회원의 서명을 받아 한국의 전자주민증반대 청원서 만들기, 한국의 대통령에게 PI회원 명의로 편지보내기, 각국 언론에 한국의 전자주민증 대한 기사 공급하기, PI 웹 페이지 (www.privacy.org)에 실기 등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PI 측에서는 한국내의 각종 시민 사회운동 단체와 변호사, 학자,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왔다. 뜻있는 단체나 개인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별첨자료 2> 호주의 ID카드 반대 캠페인

ID 카드반대캠페인의 방법

Campaigns of Opposition to ID Card Schemes.

ID카드 案은 몇몇 나라들에서 대중적 분노와 정치적 분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에서 시몬 데이비스는 ID카드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의 핵심적 요소를 분석하고, 1987년 ID카드에 대항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캠페인을 소개한다. 정부의 ID카드 계획 발표를 따라가면 불가피하게 대중의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한 논쟁은 종종 세 단계의 과정으로 발생한다: 논쟁의 첫번째 단계동안, 대중적인 시각은 대체로 신원확인이 개인의 권리와 관계된 주제가 아니다. ID카드가 제안되었을 때, 대중의 논의는 처음에는 카드 자체의 소유의 사용에 집중되었다. 이 논쟁의 단계에서는 ID의 인지된 혜택들이 토론을 지배한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그 카드의 개념이 신원 입증(은행, 대중 교통, 여행 등)이라는 엄격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인식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함없이 ID카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권위를 능률적으로 다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장치가 인식된다. 대중의 논쟁의 두번째 단계는 ID카드에 감추어진 위협을 점차 인식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function creep, 권력에 의한 남용의 잠재성,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들.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들이 종종 이 토론의 단계에서 제기된다. 권위에 의한 남용의 문제

(즉 경찰에 의한 일상적인 ID 검사)에 관해, 일반적인 대답은 여전히 "나는 감춘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겁낼 것 없어요" 이다. 논쟁의 마지막 단계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컴퓨터 백업과 숫자 시스템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숫자 시스템, ID카드, 또는 인구조사와 같은 관리 전략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적 반대는 부정적 형상(독재국가)의 조직된 캠페인과 보다 체계적인 대중 교육 과정 속에서 구축된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의 인구조사 반대 운동과 오스트레일리아 카드에 대항하는 캠페인에서, 적대적인 형상은 반대의 강력한 지적 토대와 나란히 안착되었다. 캠페인을 조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형상화는 중요하다. 어떠한 정부의 보증도 히스테리 효과를 없앨 수 없다. ID카드에 반대하는 무형의 논쟁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카드가 개인에 반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 카드가 권력의 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 카드가 어떤 면에서 적의 상징이라는 생각

ID카드가 요한목시룩에 예언된 메카니즘이라는 우려(집승의 표시) 사람들을 숫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정부가 잘못된 관리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생각

보다 강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캠페인의 초점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우려들은 이런 것이다.

모든 카드 시스템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존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통과되어야 하는가? 카드나 숫자 시스템은 정부 정책이 "쫓겨난 기술"이 되고, 법이나 대중적 과정을 통해서보다는 관료들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둑맞았을 때, 혹은 망가졌을 때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관리상의 문제들(일년에 수십만 번에 이른다고 추정되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시스템은 그것의 설립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 것인가? 만약 시스템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해체될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이 대처할 수 있는 사기와 범죄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案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권에 의한 id 카드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그러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괴롭힘, 차별, 서비스의 거절 등에 대한 불평이 아주 일반적이다.

사생활의 문제는, ID카드에 관한 우려점들에 있어 중심적인 것인데, 모든 경향의 정치철학들을 포괄한다. ID카드에 관한 우려는 좌파들 만큼이나 우파들에게 있어서도 강력하다. 카드가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이 통지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좌파는 가끔 그 이슈에 대해서 분열되지만, 그 속에는 인권에 기초해서 카드제도를 우려하는 의미있는 경향이 포함되어 있다.

ID카드가 많은 사기와 범죄 문제들을 해결해주리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의회가 그 입법안을 수용하는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국회의원들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정당을 떠나 반대당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심지어 소수의 대중들만이 카드에 반대했을 때에도 그들은 열정을 다해 그렇게 하였다.

대중들이 저절로 ID카드 개념을 지지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중들이 카드案에 저항하는 데 거의 2년이 걸렸다. 뉴질랜드에서는 발표한지 두 달 이내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저항하였다. 반항은 예견할 수 없다.

미국은 언제나 ID카드의 도입을 정부 당국과 시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제안으로 간주해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숫자 시스템과 ID카드를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아일랜드의 자료 보호위원 도널 라인헨은 열정적으로 그 案에 반대했다. 사기행위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다고"보았다.

ID카드 반대 운동에 관한 분석-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

ID카드 체계는 많은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카드라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면서 만들어진다. 카드는 또한 종종 어떠한 잠재적인 반대 캠페인의 핵심 강령을 중화시키는 자발적인 도구로써도 팔린다.

이 요소들은 최근에 카드 시스템에 대한 반대를 소멸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ID카드에 대한 반대는 몇 안되는 나라들로 제한되어 왔다. 프랑스 당국은 카드 기계를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독일 정부는 독일 ID카드를 위한 국가적인 번호체계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이고 법적인 장벽에 부딪혀 왔다. 필리핀 ID 카드는 인권그룹에 의한 반대 캠페인을 통해 공개된 비용적인 요인 때문에 1991년에 좌초되었다. 뉴질랜드 대중들은 또한 키워카드에 반대했다. 그러나 걸출한 캠페인은 호주 카드를 막은 캠페인이다. 이 운동은 최근 호주의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적 운동이었는데, 의회해산, 총선거, 노동당 정부내에 전례없던 분열을 가져왔다. 이 캠페인에서 부상했던 이슈들은 모든 나라에서 ID카드에 관계된 일련의 우려들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카드

이전 세대 오스트레일리아인들에게 ID카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ID카드는 이 차대전 중에 오스트레일리아인들에게 주어졌다. 영국의 ID카드와 유사한 이 계획은 카드의 등록과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식량 배급에 의존한 것이었고 그것은 전쟁이 끝난후에 사라져갔다.

ID카드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였다. 3개의 정부 보고서는 ID카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복지정부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고, 사기행위가 더 잘 발견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프레이저 정부의 두 내각 수상들은 이 제안을 정치적으로 쓸모없다고 간주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카드의 기원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은 탈세와 세금기피에 대한 광범한 우려속에서였다. 확산되는 복지 부정에 대한 우려와 결합되어, 몇몇 지역들에서는 ID카드 또는 국가적 등록 절차가 정부 행정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불법 이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이 제안을 더욱 부추겼다.

그리고 나서 ID카드의 개념은 1985년 국가 세금 정상회의(처음에는 노동당 국회의원 데이빗 시몬스에 의해, 그리고 이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납세자 협회의 대표에 의해) 제기되었고, 다음 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국심을 이용하여 그것을 "오스트레일리아

카드”(나중에 그것은 “안? (UN-)오스트렐리아 카드 또는 AUSH-TRALIA CARD로 널리 알려 졌다)라고 명칭을 붙였다.

오스트렐리아 카드는 모든 오스트렐리아 시민들과 영구 거주자들이 가지는 것이었다. (따로 표시된 카드는 일시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사진의 이름과 고유 번호, 서명과 유효기간을 포함했고, 고용될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것은 은행구조의 작동과 정부 혜택의 제공, 그리고 이민과 여행 통제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여섯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

* 기록부 : 모든 인구 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의 기록부. 건강보험위원회 (HIC)에 의해 유지됨.

* 코드 : 모든 인구 성원들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숫자적 정체성. HIC에 의해 지정됨.

* 카드 : HIC에 의해 발급되는 의무적이고 다목적적인 ID카드 * 의무들 : 법에 의해 모든 개인들은 여러 이유들을 위해 카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조직들은 카드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에 자료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사용 : 숫자와 자그마한 오스트렐리아카드 기록부는 다양한 대리점들과 조직들에서 그들의 관리적 토대로써 사용된다.

* 상호 신고 :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리점들은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의 서로서로의 변화를 신고해야 한다.

그 계획이 오스트렐리아 공동체 내의 관계에서 유발하기 쉬운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우려의 파문을 거의 야기하지 않았다. 이전의 여론 투표는 이 계획에 대해 70%의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이 그 계획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언론인들은 그 계획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이따금씩 했다. 의회의 반대자들은 그 계획에 반대했다. 매우 중요하게도, 소수의 헌신적인 학자들과 주창자들은 그 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애썼다.

1985년 7월, 정부기관인 NSW의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보고서”의 특정 주제를 ID카드에 바쳤는데, 오스트렐리아에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포함한 그 제안을 우려한 것이었다. 위원회의 관점은 그 제안이 단순한 신원확인 과정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그것이 권력과 권위를 정부 안으로 집중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법률센터, 시민의 자유 평의회, 대학교수들, 그리고 주창자들은 이 ID카드 계획에 대한 반대에 동참했다. 이후 2년이 넘어서(1986년 1월) 현재 퀸즐랜드 대학의 법대 학장인 조 프리드 큐 워커 교수는 관찰했다 :

자유로운 민주사회와 전체주의 체제 간의 근본적인 대립점 중의 하나는, 전체주의 정부가 체제의 비밀 속에서도 다른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고도의 감시와 폭로에 의존하는 데

비해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시민문화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ID카드 추진 반대 주창자 중의 한 명으로서 오스트렐리아의 정보감시 전문가인 그라함 그린리프는 우려했다 :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권위있는 어른들에게 ID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순수하게 자발적”이라 믿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극장에 가기 위해, 술을 마시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성인이 되어서 그들은 ID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의 일상적인 측면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오스트렐리아 카드 법안은 조사를 증가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 계획의 감시적 속성은 더 많은 주의를 받았다. 그린리프는 오스트렐리아 카드의 구성요소를 “감시의 구성요소”로 묘사했다. 이 구성요소들의 가장 명백한 것은 카드, 고유 번호, (모든 정보와 정보 교환 행위를 포함하는) 오스트렐리아 카드 기록부였고, 원거리 통신은 서로 다른 기관들과 카드 계획이라는 무기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보와 지역사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공표된 의무들, 정부를 통한 정보의 자동적인 교환, 취약한 데이터 보호, 시스템의 입법적 팽창의 용이함, 그리고 카드 숫자를 이용하기 위한 사적 영역과 정부에 카드 숫자를 이용하라는 효율적인 장려 등은 그리 분명하지 않았다.

주창자들은, 몇몇 시민법 국가들(스페인, 프랑스 등)이 ID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것도 오스트렐리아 정부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이고 위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렐리아 카드는 다른 나라들에서 단순한 신원 확인 목적으로 ID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많은 측면들에 영향을 줄 중앙 정보 기록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1985년 말, 반대세력들은 상원을 통제하여 공동 선정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그 제안을 검토할 것을 강요했다. 위원회는 언젠가는 정부를 괴롭히게 될 다양한 스펙트럼의 우려들을 제기했다. 위원회의 다수는 한 명의 정부 일원을 포함하였는데, 그들은 그 계획이 시민과 국가 간의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제안에 반대하였다. 위원회는 그러한 제안의 비용 편익 근거가 불확실하고 탄력적이며, 모든 관습법 국가들이 그러한 제안들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관습법 국가도 ID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스트렐리아 카드에 대한 토론 전반에 있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선정 위원회의 검토물들을 무시하고 그 제안을 진행시켰다.

스스로 “부정한 동맹”이라고 선언한 집단이 건설 노동자 연합의 놈 켈러거, 서부 광산 회사 사장 휴 모건, 시민의 자유 대표 론 캐스틴, 그리고 대중가수 피터 개렛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빅토리아에 만들어졌고, 국가 발행지에 광고를 실었다. 자유의지론자 아담 스미스 클럽과 센터2000, NSW와 시민의 자유를 위한 빅토리아 평의회, 오스트렐리아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NSW지부, 그리고 수많은 좌익 노동조합들을 포함한 몇몇 조직들 또한

공적으로 카드에 반대했다. 세명의 대학교수, 로저 클라크, 조프리 드 큐 워커 교수, 그리고 가라함 그린리프는 정부의 안에 대한 강력하고 설득력있는 분석을 제공하였다. 카드에 대항하는 주장들은 미디어에 의해 좀처럼 보도되지 않았는데, 미디어들은 정부의 수입 주장에 대체로 설득당한 것처럼 보인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의회의 반대세력들이 그 계획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형성하였다. 정부는 그 입법안을 상원에 두 번 제출했는데, 상원에는 과반수를 가지지 못했고, 결국 안이 기각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원에서 두번째 기각된 후 정부는 그 문제를 ID카드 입법에 대한 투표와 의회에서의 연정(그리하여 과반수가 되는)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유인으로 이용하였다.

일이 판명되자 1987년 7월의 선거 캠페인은 ID카드 문제와 거의 무관해졌다.

미디어의 여론에 있어 ID카드는 그저 의제가 아니었다. 정부는 재선출되었고 즉각 ID카드 입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그때까지 오스트레리아인들은 그 안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시드니의 마틴 광장에서 민주당 상원 폴 맥린에 의해 소집된 집회는 백명이 채 못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탈세자의 벗"이라 불리워질까봐(정부가 이미 의회의 반대자들을 분류한대로) 그들의 우려를 드러내기를 꺼려했다.

선거 후 3주가 지나자 오스트레리아 카드의 운명은 뒤집혔다. 1987년 7월 28일,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점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17명의 사람들이 카드의 소멸을 계획하기 위해 만났다. 잘 알려진 자유의지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주류 정당 지도자들, 미디어 인사들, 그리고 사업가, 농부, 지역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관련되었다.

그 회의는 트러스트를 설립하였고(나중에 오스트레리안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이라 불린다) 카드와 싸우기위한 마지막 최선의 노력으로써 캠페인을 만들었다. 미디어의 관심을 거의 결여한 상태에서 널리 알려지기 위한 묘기가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그룹은 그들의 캠페인을 시드니의 호화로운 세벨 타운 하우스의 무도회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캠페인 대회의 핵심 요소는 연사의 다채로움에 있었다. 우익 방송인 알렌 존스, 민주당 지도자 재닌 헤인스, 아메리카 컵 우승자 벤 렉슨, 그리고 록 가수 피터 개럿은 미증유의 멋진 재능의 혼합체를 제공하였고, 대회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였다. 벤 렉슨은 만약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오스트레리아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협박했고, 피터 개럿은 그것을 "오스트레리아가 지금껏 직면해온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 명명했다.

일단 이 유명한 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자 다른 명망있는 오스트레리아 사람들은 그 계획에 대한 비난에 신속히 동참했다. 前 웨스트팩 은행장 노엘 폴리씨는 카드가 "모든 시민의 사생활, 자유 그리고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솔직히 평가하여 그의 동료들을 놀라게 하였다. 오스트레리아 의학 협회 회장인 브루스 쉐퍼드 박사는 "그것은 오스트레리아인들이 오스트레리아인들을 적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카드가 오스트레리아에 미칠 끔찍한 영향력 하에서 그것을 타파하는 것은 그를 위해 내전

을 일으켜 싸울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이 굉장한 동맹에 걱정이 부추겨진 신문들과 토크쇼들은 점차 증가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보도하였다.

더 많은 오스트레리아인들이 그 계획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에 결합하였다. 우익 대학교수 런칠랜 칩맨, 공산주의자인 저술가 프랭크 하디, 前 휘틀램 정부 수상 짐 맥클러랜드, 그리고 좌익 경제학자 테드 힐라이트 교수 모두가 그 계획과 싸우기 위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敵과 제휴했다.

몇 주 이내에 거대하고 잘 조직된 운동이 진행되었다. 집회는 거의 매일 열렸다. 비록 이들이 "교육(학?)의 밤들"이라 묘사되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학기가 있는 잘 정돈된 지식이라기 보다는 적의감의 온상지였던 것이다.

9월 14일 밤은 대중들의 열의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드러났다. 그 때 4000명의 성년 사람들은 오렌지의 중앙 뉴 싸우스 웨일즈 타운으로 몰려갔다. 도시 인구의 팔분의 일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중적 분노의 거대한 물결은 곳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생겨난 수많은 지방, 그리고 지역 위원회에 의해 발생된 것이었다. 매일 모이는 집회는 서부 오스트레리아 의사당 밖에서 30,000명이 모여 정점에 이르렀다. 캠페인을 조직했던 오스트레리안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은 중앙 경제지구를 둘러싸고 그 끝을 이루는 시드니와 멜버른에서의 집회를 계획했다.

그 몇 주간의 열정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불복종하도록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노동당 간부회의에서는 일찍이 폭력을 일으킬 뻔했고, ID카드에 반대하는 대중의 시위는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의 독자편지란은 오스트레리아인들의 강력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나는 신청하기 싫다!", "대안은 죄수의 차꼬이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 "나찌 독일을 연상시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리고 "소극적인 저항이 내 표를 가져간다" 등과 함께, "우리는 숫자가 되기 싫다!"는 편지란의 전형적인 헤드라인이었다. 만화가들은 나찌의 제복을 입은 로버트 호크 수상을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이 강렬한 열의에 기여했다.

캠페인 마지막 날 채널9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되는 중요한 국민 여론투표는 카드에 대한 90%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평소에 차분한 논조의 오스트레리안 파이낸셜 리뷰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권의주의적인 과세를 지지하면서, "수입 주장을 이용하는 것(우리는 오스트레리아 카드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은 그저 추잡한 일이다"고 결론짓는 통렬한 사설을 내보냈다.

ID카드 입법안의 상세한 점들에 관한 소식이 확산되자...만일 당신이 ID카드 없이 고용되었다면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벌금 \$20,000). 만일 그래서 당신이 사임을 강요당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카드없는 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이 정해놓았기 때문이다(벌금 \$20,000). ID카드가 없는 농부는 그들의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벌금 \$20,000). ID카드가 없는 사람은 투자할 수도 없고 사무변호사에게 돈을 주

거나 받을 수 없고, 또는 가족, 재산, 혹은 현금관리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사거나 빌릴 수 없고(별금 \$5,000), 실업자나 부모 부양자, 노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카드가 우발적인 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못쓰게 되었다면 5,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2년간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둘 다를 해야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카드를 잃어버리고 21일 안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ID카드 대리점에서 나오라고 한 의무적인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결과는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간의 감옥생활이다. 세무소의 요구로 당신의 ID카드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못하면 벌금 20,000달러.

그 때에, 카드의 제조자인 HIC는 진정 검색을 채고 있었다(?). 토크 백 라디오 진행자들은 오스트렐리아 카드에 관한 HIC의 계획 보고서의 단락을 인용하길 좋아하게 되었다.

'그 시스템의 이행에 반대하는 어떠한 대중의 반항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이행을 위한 계획된 접근을 이용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그 시스템에 있는 덜 민감한 사항만을 주장하여 대중들이 곧 보다 기꺼이 수용하려 하는 이후의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투입하기 쉽게 하는 것을 통하여.

캠페인 조직가들은 카드의 거짓된 자발성을 강조했다. 사람이 실제로 카드를 갖게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강제적인 것이 아닌 반면, 사회 속에서 카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기실 정부는 실제로 정부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거짓된 자발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9월 중순 쯤, 정부는 내부의 위기에 직면했다. 당의 우파 성원들(특히 주변부의 사람들이) 간부회의 내에서 우려를 표시한 반면 좌파들은 카드에 반대하기 위해 열을 흐트러뜨렸다. 수상의 대변인 라이오넬 보우원은 정당이 조심하여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며 再考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몇 주일 이내에, 대중의 거대한 저항과 정당의 반란, 그리고 시민들의 불복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ID카드 案을 연기했다. 반대자인 상원의 존 스톤에 의해 드러난 입법안의 기술적 결점에 대해 체면을 세워주는 편리한 수단이 제공되었다. 정부는 입법안을 다시 제출할 선택권을 가졌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결함이 발견됐다는 기쁨에 정부가 의기를 꺾었다고 보도했다.

호크 정부는 오스트렐리아 카드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핵심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권리에 대한 억측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정부가 자기 좋은대로 할 통치의 위임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두번째로, 애국심에의 호소(이것을 오스트렐리아 카드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것의 법적 강제 기능이 그 메카니즘과 더불어 신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대중들의 논쟁이 고도로 정교해져갔다. 정부는 시민과 국가 간 관계의 권력 균형에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학술전문가와 캠페인을 이끄는 주창자들에 따르면, 카드는 "function creep"을 경험할 것이고 삶의 많은 측면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것들은 정부의 보증이 결코 대항할 수 없는 위협들이었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몇가지 매우 실질적인 사생활과 자료보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들은 자료의 안전, function creep, 자료 비교와 관련된 침입, 정보의 부적합한 사용과 노출, 잘못된 정보, 중앙 통제와 추적의 확립, 그리고 "내부 허가증"의 발생 가능성 문제들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지하 경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정부의 무능력과 결부되어,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정부 지지자들도 회의적으로 되어갔다.

1987년 오스트렐리아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권력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했다. 뉴 싸우스 웨일즈 항소법원장인 마이클 커비 판사는 "만약 ID카드가 있다면 권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참으로 위태로운 것은, 우리 사회와 개인 위에 있는 국가의 권력과 권위이다."라고 말했다.

<별첨자료 3> 내무부 사업계획

전자주민카드발급사업계획
제도개선 추진 개요
통합전자주민카드 수록항목

전자주민카드발급사업계획

1996. 6. 내무부

I. 추진배경

- 현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경신이후 12년이 경과되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될 뿐 아니라 기능이 단순 신분확인에 국한되어 정보화 시대체 걸맞는 신분증으로 일제경신이 시급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하여 기능을 다양화하고 특히 연간 1억 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감축할 수 있는 휴대증명제도 도입
- 또한 컴퓨터 통신, 전자거래, 각종 신고·민원처리의 자동화 등 정보화사회에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 제작 보급

II. 추진목표

- '98년까지 34백만 국민의 전자주민카드의 발급과 운영망 구축을 완료하되
 - 종이없는 증명민원행정과 One-Stop 민원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 각종 증명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 운영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 민원행정의 세계화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행정의 능률화 도모

III. 추진방침

- 전자주민카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기능을 우선 통합하고 각종 자격증과 금융기능 등은 추후 검토
- 사업은 3개년('96-'98) 계획으로 추진하되, 비용은 비용/편익을 감안 기관별로 분담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추진협의회 및 기획단을 사업완료시까지 운영
- 통합증은 업무별로 독립적인 증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 제반 기술의 국산화 추진
- 자료의 통합관리와 카드의 일괄발급을 위해 중앙에 발급센타를 구축하고, 종합통신망은 주민망과 초고속통신망을 이용 구성
-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기술을 접목하여 업무를 개발하되, 업무별로 독립된 기능 수행을 위해 각 관계기관의 전산망 시스템과 연계 개발 추진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전반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PC에 전자카드 판독기를 기본사양으로 장착
- 개인정보보호와 발급센타의 해커침입 방지 등을 위해 발급센타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최고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IC카드를 제작하고 전산망을 구축

IV. 추진체계

-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주요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로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
 - 정부부처, 투자기관, 대학교수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사업추진과 제도개선 및 전담사업자 관리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
- 기술자문과 개발시스템에 대한 기술감리를 위해 한국전산원을 감리기관으로 지정 운영
- 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전자주민카드 전체 시스템 설계와 발급센타 구축 및 업무개발을

담당

-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모형을 설계하고, 발급시설을 구축하여 카드의 제작과 발급을 담당
- 한국전산원은 학계 전문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와 공청회 및 기술적 검토 등 수행
- 읍·면·동, 운전면허시험장, 의료보험공단 및 조합,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는 전자카드에 수록할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전자카드의 핵심인 8KB용 IC를 생산 제공하고 전자카드 판독기는 국내 컴퓨터 장비 제조업체에서 보급

V. 세부추진내용

① 증명종합 및 발급절차

-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7개 기능을 통합하되, 총 1억9천2백만건의 증명을 통합
- 통합정보는 총 41개사항으로 주민등록 14, 운전면허 7, 의료보험 8, 국민연금 10, 지문 정보 1, 발급기관정보 1 등이며, 카드 외부에는 12개 사항을 기재하고 IC에는 41개 전 사항 입력
- 카드의 외부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과 운전면허의 기본사항, 지문, 의료보험 등의 유의사항만 기재 관리하고 각 증명의 발급기관장은 IC내에 수록 관리
- 혈액형 등 개인의료정보는 정확성이 필요하므로 우선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를 설계하되, 자료입력 여부는 추후 결정
- 전자주민카드의 모형은 한국전산원이 공모 등을 통해 기본 도안을 마련한 후 조폐공사에서 비표 등을 감안 최종 도안을 작성하고 전자주민카드의 명칭도 공모 등을 통해 최적(안) 선정
- 발급 초기에는 발급센터에서 일괄 발급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령하여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교부
- 일제 발급이 완료된 후 신규 17세자 발급이나 분실자의 재발급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중앙센터에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특수 등기로 우송하게 되며, 기간은 신청

후 2~3일 소요

② 전자주민카드 운영 및 개발업무

- 카드 외부에는 비표화 특수처리를 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증 변조로 인한 여권변조,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본인적사항과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 누구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을 열람하거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공공기관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의료보험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발브센타의 정보를 무인발급기를 통해 민원인이 소지한 전자카드의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발
- 전자카드에 있는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각 기관에 변동사항 신고시 카드를 제출 갱신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갱신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처리하거나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 갱신하게 되며, 이때 카드의 내용과 발급센터의 내용을 비교 상이한 증명은 모두 갱신
- 운전면허는 휴대용 판독기를 보급하여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카드없이 병·의원 등을 이용할 경우를 위해 발급센터에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설치하여 의료보험사항을 전화로 확인
- 인감확인용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구나에서 민원인이 지참한 전자카드내의 화상인감과 소지한 인감을 컴퓨터로 상호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인감을 날인하거나 증명서 형태로 출력 사용
- 경찰의 휴대용 판독기에 수배자와 도난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교통경찰이나 일반 검문경찰이 수배자와 도난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할 때에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된 카드의 겉면에 열전사기로 자격사항을 인쇄하고 IC에 정보를 입력하며, 정지, 취소시에는 경찰서 등에서 열전사기를 이용 처리
- 지문의 이미지는 카드 겉면에 인쇄하고, 국민 개개인별로 다른 특징점을 추출하여 IC에 입력함으로써 본인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읍·면·동이나 가정, 무인발급기 등 카드 판독기가 설치된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본인의 가입 및 수급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
- 업무개발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되어야 하므로 전담사업자 총괄하에 일관성 있게 개발하되 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간의 연동과 호환성 유지를 위해 각 기관이 업무개발에 적극 지원
- 각종 시스템과 통신망, S/W는 정보통신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국내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술을 도입 개발

③ 발급 센터 구축 및 기능

<< 목 적 >>

- 17세 이상 34백만명의 전자카드를 일괄 발급하기 위한 시설 구축
- 다기능 전자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각종 증명의 종합자료망 유지
- 각 운영기관과 온라인망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 지원체제 확보

<< 구축방향 >>

- 자료의 유지관리와 인력·비용·보안 등을 감안 중앙 한 곳에 설치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시는 인력과 비용 과다 소요
 - ※ 자료과 발급시설을 동일장소에서 통합 관리
- 발급센터는 신규로 사용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사항, 운전면허사항, 의료보험사항, 국민연금사항 등의 대량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발급센터가 구축되면 전 주민등록전산망 완전 수용
 - 현 시스템의 업무를 수용하고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통합자료를 발급센터에서 항상 현시자료 유지
- 발급센터 운영은 유고나기관과 합동으로 인력을 구성 운영
 - 카드발급 및 업무개발과 시스템 운영요원은 별도 충원

<< 기 능 >>

- 전산망과 통합 증명의 종합정보 유지관리
 - 전자카드 정보입력을 위한 1억 9천만건(4조바이트)의 자료관리
 -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사진, 지문, 인감등
 - 읍·면·동 등 5,000개기관 10,000대의 단말기와 온라인망 운영
 - 일일 2백만건이상의 변동자료 처리 및 열람업무 지원
- 전자주민카드의 제조 및 발급 관리
 - 비표와 암호기능이 부여된 카드에 ic를 접합 백지 전자카드 제작
 - 카드 겉면에 사진과 기본 인적사항 인쇄 등 전자주민카드 발급
 - IC내에 주민등록등·초본사항 등 각종 증명의 상세사항 입력
 - 발급된 전자주민카드의 검증 및 교부
 - 각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위·변조카드 및 분실카드 확인 지원
- 국가 인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기능 수행
 - 정부 행정기관간의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중앙센터 기능
 -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One-Stop 민원서비스의 핵심 기반구축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병역증명 등 각종 증명민원 감축
 - 증명의 무인 자동발급 및 온라인 자료검색업무 지원
 - 조세,연금, 의보 등 국가적 정책정보사업의 인적정보 제공지원
 - 현 내무부와 시·도의 주민등록전산망 처리업무 수용

<< 전산망구축 >>

- 주전산기는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 신뢰성, 안정성과 대규모의 자료처리와 온라인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한 시스템으로 설치
- 통신망은 보안과 해커 침입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동활용 등을 감안하여 설계

<< 자료구축 >>

- 자료는 각 기관의 전산망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통합증명에 수록될 항목을 추출하여 종합 DB를 구축하고, 주민등록자료를 주민등록등·초본 활용과 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사항을수록 관리

- 사진과 지문 DB는 읍·면·동을 방문한 17세이상 국민으로부터 채취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인감 DB는 읍·면·동에 등록된 인감을 컴퓨터로 입력
- 발급센터 자료의 현시성 유지를 위해 변동사항은 온라인으로 처리

<< 발급시설구축 >>

- 백지 전자카드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 단계부터 발급단계까지의 전 시설 장비를 발급센터에 구축하고, IC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산단계부터 관리

④ 운영망 구축

-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운영기관은 각 기관별로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망 구축
- 전자주민카드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 단말기와 운영용 S/W가 필요
- 전자주민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전자카드 단말기와 운영용 S/W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행정망용과 민수용 PC 표준 사양을 개정
- 또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제도를 전자주민카드와 발급센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⑤ 보안체계 구축

- 전자주민카드의 이용은 국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정보유출과 개인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 우려
- 따라서 전자카드 자체의 보안기능과 시스템 및 통신망, 발급센터 시설 등 분야별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총괄적인 보안체계 구축
- 카드에 대한 보안대책으로는 카드내의 자료가 물리적, 논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화 기능 부여
- 전산시스템은 보안기능이 우수한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은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망으로 구성
- 전 국민의 중요 인적정보가 수록되고, 전자카드를 제작하는 발급센터는 국가 보안목표

시설에 준하는 보안시설로 구축

- 학계 및 연구기관 합동으로 보안체계를 연구하도록 하여 센터구축과 카드 발급시 반영

⑥ 교육 및 홍보

- 교육은 운영기관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운영기관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은 안내책자와 홍보매체 등을 이용 실시
- 17세 이상 국민의 사진, 지문채취 협조와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와 반상회보 등 행정기관 홍보매체 적극 활용

⑦ 제도개선

-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중의 모형, 용도, 활용범위 등 제도개선의 방향과 대상을 정리
- 추진기획단에 제도개선팀을 구성하고 기관별로는 자체 개선반을 설치하여 '97.7월 목표로 법령 개정 추진

VI.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사업은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 '96년에는 발급센터구축 및 업무개발
 - '97년에는 종합자료망 및 전자주민카드 운영망 구축
 - '98년에는 17세이상 전국민의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운영
- 사업비는 '98년까지 총 2,735억원 투자
 - 연도별 투자내역 : '96년 483억, '97년 882억, '98년 1,370억
 - 예산내역
 - 카드 구입 및 발급비 2,100억, 발급센터 구축비 등 635억

VII 기대효과

- 연간 1억 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감축으로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통합 활용
- 신분증 위,변조 근절로 사회분위기 쇄신 및 신용사회 구축
- 주민등록표 수기 작성 폐지 및 인감증명발급의 온라인화
- 각종 신고서 접수 처리의 자동화 및 지문전산화
- 종합전산망 가동으로 민원행정의 One-Stop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민들의 장보화 마인드 확산 및 국내 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제도개선 추진 개요

-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관련 개별법령 개선
 - 현행 규정 개정 및 전자카드의 제도적 시행근거 마련
 - 주민등록제도등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사생활 최대한 보호 중점
- '97년. 12까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무처리지침 개정 완료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추진기획단에 제도개선팀을 구성, 각 개별법령 검토 추진
 -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 국민연금제도
 - 전자주민카드로의 전환에 따른 증명서식, 증명운영방법, 정보활용근거 등 검토
- 증의 명칭 및 도안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예정(한국전산원)

□ 추진방침

- 추진기획단에 법령, 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연구팀 구성 운영
- 유관기관 및 시,도에 자체 연구팀을 구성 추진기획단과 상호협조

- 한국전산원에 산,학,연 합동팀을 구성 기술,정보 보호분야 연구
-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대국민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 추진계획

○ 정비대상

통합증명제도 운영과 관련한 3개기관 5개법령(시행령, 시행규칙포함)

- 내 무 부 :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 보건복지부 :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 경 찰 청 : 도로교통법

※ 기타법령은 주민등록법에서 일괄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법의 관계규정 개정

○ 검토절차

- 추진 기획단에서 기본적인 개정사항 및 처리절차 작성, 통보
- 각 기관별로 개별법의 개정(안) 검토 및 작성
-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 국무회의 및 국회심의

○ 추진일정

- 제도개선(안) 연구,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 '96. 12
-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97. 2
- 국무회의 심의 및 임시국회 상정 : '97. 4 ~ 5
- 시행령,시행규칙 및 사무처리지침 개정 : '97. 12

□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구 분	구 성	담 당 업 무
협의회	○ 재경원, 내무부, 안기부, 복지부, 정통부, 통산부, 경찰청의 국장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의 이사, 단장 ○ 학계(정보학 교수)	- 사업계획 심의, 조정 - 제도개선사항 심의 - 자원조달 및 일정계획 심의
추진 기획단	○ 재경원, 내무부, 안기부, 복지부, 정통부, 통산부, 경찰청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 ○ 전산망사업자	- 사업추진총괄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 제도개선 및 자원조달 추진 - 발급전담기관 및 전산망 사업자 관리, 감독 -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 카드 및 장비의 표준화 - 전자주민카드 검수
감리기관	한국전산원	- 기술지문 - 사업감리
전산망 사업자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전산망 및 발급센터 구축 - 발급 및 운영업무 개발 - 시험운영 및 교육 - 전자카드 사양제정 및 인증지원 - IC 검수 - 운영장비 사양제정

구 분	구 성	담 당 업 무
발급 전담기관	한국조폐공사	- 증 도안작성 및 백지증 제작 - 전자카드 사양제정 및 인증지원 - IC 검수 - 증 위,변조방지 기법 개발 - 발급시설 구축 및 발급
운영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제증명이용기관	- 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 변동사항 갱신발급 - 화상DB 입력 - 전자주민카드 활용 - 대국민홍보

통합전자주민카드 수록항목

1. 공통사항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세대주민번호, 당시세대주성명, 당시세대주관계, 변동사유, 상태
2. 개인의료정보
혈액형, 기록기관명, 기록일자, 약물과민사항
3. 인감
4. 개인사항
성명, 주민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5. 인적사항 1
일자, 구분, 사유, 변경전
6. 인적사항 2
일자, 구분, 사유, 변경전
7. 이력사항 1
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세대주민번호, 당시세대주성명, 당시세대주관계, 변동사유

8. 이력사항 2

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세대주주민번호, 당시세대주성명, 당시세대주관계, 변동사유

9. 병역사항

역종, 군별, 군번, 수검일, 전역일, 전역사유, 전역근거, 병과, 주특기, 병과

10. 세대사항

세대주성명, 호주성명, 호주의관계, 세대구성사유, 구성일자

11. 세대이력

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2. 운전면허

면허종류, 면허번호, 교부일자, 면허조건, 발행권자, 적성검사기간, 면허정지취소여부

13. 의료보험

보험자명, 보험기관, 관리번호, 구분, 구분항목, 대진료권, 중진료권, 피보험자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피부양자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유효기간

14. 국민연금

최초취득일, 최초가입종별구분, 총불입액, 총가입액, 가입자관계, 급여종별, 수급사유일, 수급증서번호, 카드최종수록일

15. 가족 1

세대주관계, 구분, 성명, 주민번호,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성명, 국외이주신고일자

16 가족 2

상동

17 가족 3

상동

18. 검중사항

주민등록보관지, 발행기관명, 기관코드, 발급일자

19. 지문